

# 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내규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육이념과 목적 및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에 따라 대학의 아동발달 및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아동발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명칭)**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아동발달지원센터라 한다.

**제3조 (기능)** 본 센터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이 정상적 성장발달을 이루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치료(놀이,인지,언어치료등), 검사 및 상담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
**제4조 (소재지)** 센터는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내에 둔다.

## 제2장 조직

**제5조 (조직)** ① 본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 9. 1>

② 소장은 센터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소장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간사, 치료사, 연구원등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은 별도의 지침 및 계약에 의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 (구성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 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 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치료 및 상담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2. 치료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, 예결산 및 연구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8조 (소집 및 의결정족수)**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설치과정 및 업무

**제9조 (설치과정)** 본 센터는 놀이치료과정, 언어치료과정, 인지치료과정, 가족치료, 부모교육과정 및 필요한 과정을 둔다.

**제10조 (치료기간)** 본 센터의 치료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상태와 형편에 따라 치료사와 부모가 협의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치료 및 검사대상)** 본 센터의 치료 및 검사대상은 모든 아동으로 하며, 특별한 자격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**제12조 (연구업무)** 본 센터는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할 수 있다.

## 제5장 회계

**제13조 (회계연도)**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와 같다.

**제14조 (예·결산서 제출)** 소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·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  
② (내규의 개폐) 본 규정의 개정 및 폐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